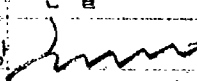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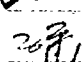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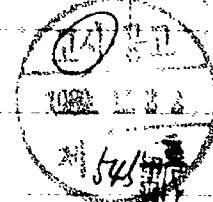


# 기 안 용 지

분류기호 분기번호	재개 30420-3332	(전화 : 731-6357)	지정장 도민회관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 10.5.3.1.	시	장
순서처 분류기준	준영구		
시행일자	89.12.		
보존 기준 사항	주택국장	전 결	법무담당관 (고시안심사) 협조통제관
	재개발국장		
	사업2계장		
기안책임자	손 세 용	2.20	
심 수 신 검 조	각안참조		
내 역	반도특정가구 정비사업 실시 계획 변경인가.		
(제1안) 내부결재			
<p>1. 우리시 고시 제405호(78.8.11), 제594(78.11.11)로 실시계획 인가된 반도특정가구 정비지구(한일은행분구)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시설(도로)부담및 기부채납이 미완료되어 사업기간 변경 요청이 있어</p> <p>2. 도시계획법 제25조, 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및 사업시행 독촉 보자 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다 음</p> <p>가. 사업기간</p>			
지 구 명	변 경 전	변 경 후	비 고

Mm

89.12.27  
작성  
시 장



한일은행분구	78. 7 - 89.11.30	78. 7 - 90.11.30	
(제2안)			
수신 : 수신처 참조			
제목 : 동 건			
1. 귀사에서 신청하신 반도특정가구 정비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(기간연장)			
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인가 하오니 기간내 미완료사항 (확정측량포함)을 이행			
하여 사업을 완료할수 있도록 적극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제1안"가"항 이기시행)			
수신처 : 중구 남대문로 2가 130 (주)한일 은행 대표 박 명규			
(제3안)	교	시 (안)	2시
서울특별시 교시 제 호			
반도특정가구 정비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.			
1. 서울특별시 교시 제405호(78.8.11)로 실시계획 인가된 반도특정가구 정비			
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			
인가하고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			
(제1안 "가" 항 이기시행)		1989. 12.	
(제4안)			
수신 : 총무처장관			
제목 : 관보 게재의퇴.			

1. 우리시 고시 제409(78.8.11)로 실시계획 인가된 반도특정가구 정비지구

정비사업이 별첨 고시문과 같이 변경인가 되었기 관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고시문 사본 2부. 끝.

4332

고 시 (안)

서울특별시 고시 제545호

반도특정가구 정비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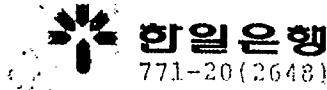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405호(78.8.11)로 실시계획 인가된 반도특정가구 정비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가. 사업기간

지구명	변경전	변경후	비 고
한일은행분구	78.7 - 89.11.30	78.7 - 90.11.30	

1989. 12. 22.

서울특별시 장



한일관관 : 제509-121호

과장

*Handwritten signature and number 2583*

수 신 : 서울특별시청

참 조 : 재개발과장

계 목 : 반도특정가구 정비지구(한일은행분구) 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

1. 평소 귀사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
2. 백해은 귀사 도장 제452-200호(78. 8. 11)로 반도특정가구 정비지구(한일은행분구)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재개30320-408호(87. 11. 26)로 사업 인가승인을 받아 추진하여 왔으나 일부 사업시행조건이 미완료되어 동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유기 사업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신청 하오니 신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
다 음

- 1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30번지와 10필지
-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반도특정가구정비지구(한일은행분구) 정비사업
- 3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30번지

주식회사 한 일 은 행  
은행장 박 명 균

- 4. 사업기간 : 당초 : 1978년 7월 - 1989년 11월 30일  
변경 : 1978년 7월 - 1990년 11월 30일 (1년연장)

- 5. 사업시행면적 및 규모  
시행면적 : 1,516.5평 (11필지)

시행규모 : 대지면적 2,318.4평

건축면적 - 734평

연면적 - 13,180평 (지하 3층, 지상 21층)



별첨 : 언장사유서 1부

(이해관계인)의견서 각 1부

1989년 11월 일

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30번지

주식회사 한일은행  
은행장 박명규



연 장 사 유 서

사업인가 조건중 현재 미결 상태인 공공시설(도로) 부담의  
건은 께행이 기부채납을 위해 사전 해결해야할 사항들이 아직  
남아있어 본건 연장신청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989년 11월 일

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30번지

주식회사 한 일 은 행

대표이사 박 명 규



의 건 서

금번 귀행의 반도특정가구 정비지구(한일은행분구) 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본인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.

아 래

1. 변경내용 : 사업기간 연장

당 초 사업기간 : 1978년 7월 - 1989년 11월 30일

변경후 사업기간 : 1978년 7월 - 1990년 11월 30일

(1년간 연장)

2. 변경계획에 대한 의견

· 없음

1989년 11월 일

토지 소유자 : 서울特別市中區小公洞 21 號 1B

韓國建物業株式會社  
代表理事 金祥兆

주식회사 한 일 은 행 귀하